

성북구공고 제2016-1336호

종암3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직접해제 대상구역 공고

1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제3항제4호에 의거 단계별 사업추진이 지연된 종암3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1 이상이 정비구역해제 요청하여 구역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미만으로 조사되어 서울특별시로부터 직접해제 대상구역으로 통보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
2. 본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우리구(주거정비과)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년 12월 29일
성북구청장

가. 공고기간 : 2016. 12. 29. ~ 2017. 01. 18.

나. 직접해제 대상구역

구역명	위 치	직권해제 이유	근거
종암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	성북구 종암동 103일대	· 추진위 승인일(09.2.55)부터 3년이내 조합설립 미신청 · 총회 2년이상 미개최 ·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미만	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

다. 의견 제출

1) 제출기간 : 2016.12.29. ~ 2017.01.18.

2) 제출방법 : 의견서를 작성하여 성북구청(주거정비과) 방문, 우편 또는 팩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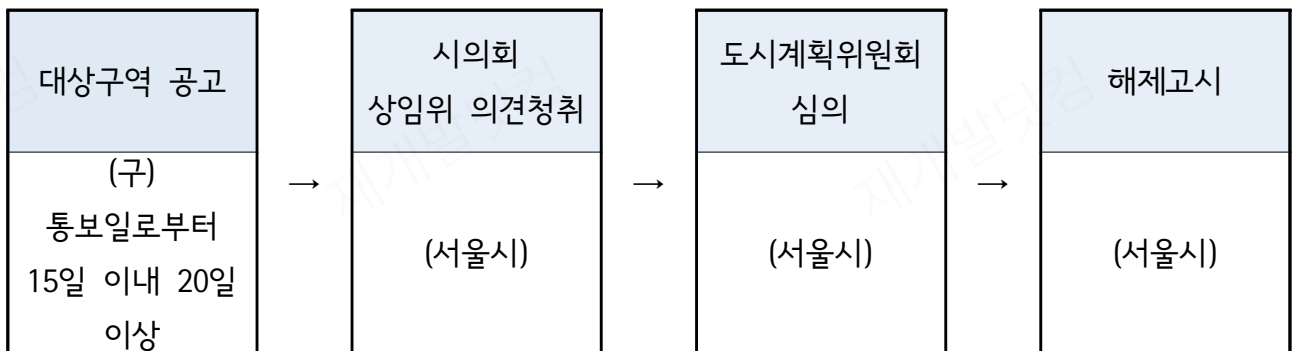
3) 제출사항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생년월일 등
- 직접해제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

4) 제출처

- 우편 또는 직접방문 :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(삼선동5가 411번지)
성북구청 주거정비과(9층)
- 팩 스 : 02-2241-6545

라. 향후 절차



마. 문의 :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☎ 02 - 2241 - 2913

인 사

《발령 제252호》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배 경 룬	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육아)을 명함 (2016.12.30.~2018.12.31.일까지)	행 정 국	지방사회복지 서 기

(2016.12.30.일자)

《발령 제254호》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신 영 훈	행 정 국 근 무 를 명 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요양)을 명함 (2017.01.01.~2017.06.30.)	행 정 국	지 방 행 정 사 주
2	김 미 숙	행 정 국 근 무 를 명 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 정에 의하여 휴직(육아)을 명함 (2017.01.01.~2018.12.31.일까지)	교육아동 청 소년 담당 관	지 방 행 정 사 주
3	주 진 희	행 정 국 근 무 를 명 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 정에 의하여 휴직(육아)을 명함 (2017.01.01.~2018.02.28.일까지)	복지정책과	지 방 행 정 사 보 주
4	박 종 원	행 정 국 근 무 를 명 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 정에 의하여 휴직(육아)을 명함 (2017.01.01.~2017.12.31.일까지)	복지정책과	지 방 행 정 사 보 주

연번	성명	발령내용	현직	
			소속	직급
5	정현선	행정국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휴직을 명함 (2017.01.01.~2017.12.31.일까지)	생활보장과	지방사회복지 서기보 (시간선택제)
7	최은경	행정국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육아)을 명함 (2017.01.01.~2017.12.31.일까지)	건축과	지방행정 주사보
6	신선용	행정국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휴직을 명함 (2017.01.01.~2017.12.31.일까지)	문화체육과	지방행정 주사보
8	최다인	행정국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휴직을 명함 (2017.01.01.~2017.12.31.일까지)	교통행정과	지방행정 서기
9	홍유미	행정국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휴직을 명함 (2017.01.01.~2017.06.30.일까지)	삼선동	지방행정 주사보
10	이유나	행정국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휴직을 명함 (2017.01.01.~2017.12.31.일까지)	월곡제1동	지방행정 주사보
11	박지영	행정국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육아)을 명함 (2017.01.01.~2018.01.31.일까지)	장위제2동	지방행정 주사보
12	송인심	행정국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5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휴직을 명함 (2017.01.01.~2017.06.30.일까지)	돈암제1동	지방행정 주사보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3	김 신 예	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육아)연장을 명함 (2017.01.01.~2018.01.31.일까지)	행 정 국	지 방 행 정 주 사 보
14	오 리 라	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육아)연장을 명함 (2017.01.01.~2017.12.31.일까지)	행 정 국	지방사회복지 서기보시보 (시간선택제)

(2017.01.01.일자)

《발령 제255호》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김 은 주	행정국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육아)을 명함 (2017.01.02.~2018.01.31.일까지)	월 국 제1 동	지 방 행 정 주 사 보
2	김 태 형	행정국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휴직을 명함 (2017.01.02.~2017.12.31.일까지)	장 위 제2 동	지 방 행 정 서 기

(2017.01.02.일자)

《발령 제256호》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황 인 선	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육아)연장을 명함 (2017.01.05.~2017.07.04.일까지)	행 정 국	지 방 행 정 주 사 보

(2017.01.05.일자)

《발령 제257호》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이 주 연 (84.*.*)	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육아)을 명함 (2016.12.30.~2017.12.31.일까지)	행 정 국	지 방 행 정 주 사 보

(2016.12.30.일자)

《발령 제258호》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이 동 임	복 직 을 명 함 (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예정)	행 정 국	지 방 행 정 주 사 보
2	이 주 연 (74.*.*)	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54호의 규 정에 의하여 가사휴직 연장을 명함 (2017.01.01.~2017.02.28.일까지)	행 정 국	지 방 행 정 주 사 보
3	백 다 영	복 직 을 명 함 광 진 구 전 출 을 명 함	행 정 국	지 방 행 정 서 기

《발령 제 259 호》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김 예 슬	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 정에 의하여 휴직(육아)연장을 명함 (2017.1.4.~2019.01.03.까지)	행 정 국	지 방 전 산 서 기

(2017. 1. 4. 字) 끝.

